##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(맹성규·이양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

발의연월일: 2024. 6. 3.

발 의 자: 맹성규·이양수·성일종

복기왕ㆍ허 영ㆍ신영대

김민석 • 이종배 • 송기헌

임호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, 2025년에는 20. 3%, 2060년에는 43.9%로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.

하지만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. 2021년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은 양로시설 195개, 노인공동생활가정 107개, 노인복지주택 36개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.1%에도 못 미치고 있고,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.

또한 노인복지주택의 대부분은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가의 관리비로 인해 고령자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지 선택의 폭 또한 제한적임.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반면에 은퇴자의 노후에 대한 대책은 마땅히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.

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,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, 정신적 건강은 물론 여유롭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.

이에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(도시)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은퇴자마을(도시)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은퇴자마을(도시)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·교육·문화·체육·복지·관광·지원·환경·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·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,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(도시)본부를 둠(안 제3조).

- 라.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은퇴자마을(도시) 정책의 기본방향 ·수요·공급정책·지정·개발·우선순위 및 기능개선, 효율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마.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지방공사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를지정함(안 제5조).
- 바.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기관 및 관할 시·도지사 등과의 협의 및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).
- 사.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가 지정·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,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(안 제14조 및 제16조).
- 아.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을 건설하여 입주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, 은퇴자마을 (도시)주택의 입주자의 자격,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

-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(안 제27조).
- 자.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분양가격 등 분양조건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입주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함(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).
- 차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(도시)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 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 고,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41조 및 제42조).

###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은퇴자마을(도시)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,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은퇴자"란 60세 이상 국민으로서 은퇴자마을(도시)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
- 2. "은퇴자마을(도시)"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·교육·문화·체육·복지·관광·지원·환경·공원녹지 시설 등 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·개발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말한다.
- 3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.

- 4. 「노인복지법」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.
- 제3조(은퇴자마을(도시)본부) ①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, 제4조에 따른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(도시)본부를 둔다.
  - ② 은퇴자마을(도시)본부의 기능·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,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4조(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은퇴자마을(도시) 정책의 목적 및 기본방향
  - 2. 은퇴자마을(도시)의 수요에 관한 사항
  - 3. 은퇴자마을(도시)의 공급정책에 관한 사항
  - 4. 은퇴자마을(도시)의 지정·개발에 관한 사항

- 5. 은퇴자마을(도시)의 지역별·규모별·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- 6. 은퇴자마을(도시)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
- 7. 은퇴자마을(도시)의 운영 · 지원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
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· 군계획
- 3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 본계획
- 4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
- 제5조(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를 지정한다.
 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 - 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 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

- 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 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·설립한 법인
- 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.

#### 제2장 은퇴자마을(도시)의 지정

- 제7조(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조성사업(이하 "지구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  - ② 제5조에 따른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.
  - 1.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
  - 2.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지정으로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 밖의 토

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

- 3.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
- 4.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 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5.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를 지정・변경・해제하거나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지정・변경・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, 지역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지정・변경・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,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.
- 제8조(은퇴자마을(도시)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 ·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보건복지부·국방부·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- 1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(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,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)
- 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은퇴자마

을(도시)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- 제9조(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)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하여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9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공주택사업자"는 "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"로, "주택지구"는 "은퇴자마을(도시)지구"로 본다.
- 제10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지 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행위제한 등)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 1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택지구"는 "은퇴자마을(도시)지구"로 본다.
- 제12조(은퇴자마을(도시)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위치·면적,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, 사업의 종류, 수용 또는 사용할 「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・물건 및 권리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 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지정·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,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·군계획시설,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·변경된 것으로 보며,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.

## 제3장 은퇴자마을(도시)의 조성 제1절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조성

제13조(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가 지정·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계획(이하 "지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·신청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, 구비서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지구계획 승인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.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. 다만,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지구계획의 개요
  - 2. 토지이용계획
  - 3. 인구·주택 수용계획
  - 4. 교통・공공・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
  - 5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
  - 6.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
  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,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 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 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 등의 의제) ① 제14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·허가·인가·결정·신고·지정·면허·협의·동의·해제·심의 등 (이하 "인·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  - 1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·신고사항의 변경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·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
  - 2.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
  - 3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·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
  - 4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·사용허가,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, 같은

법 제17조에 따른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·고시

- 5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
- 6.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, 같은 법 제 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
-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 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작성 및 인가
- 8.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
- 9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
- 10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, 「소음· 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
- 11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
- 12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

- 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
- 13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
- 14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
- 15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
- 16.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·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,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·신고와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5항에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·신고 및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
- 17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허가
- 18. 「수도법」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
- 19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
- 20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임업진 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

- 2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
- 22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
- 23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
- 24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25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
- 26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27. 「초지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,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
- 28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 는 신고
- 29. 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
- 30. 「하천법」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,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, 같은

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퇴자마을(도 시)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·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을 면제한다.
- 제16조(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「주택법」 제2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·철도·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・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토지에의 출입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지정을 제안하

는 자 또는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·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·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·토석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수 있다.

-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"행정청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"는 "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"로 본다.
- 제18조(토지등의 수용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 (도시)지구의 조성 또는 은퇴자마을(도시)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  - ②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를 지정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은퇴자마을 (도시)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제24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25조에 따른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

기간 내에 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.
-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- 제19조(건축물의 존치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 (도시)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

소유자에게 도로, 공원, 상하수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・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국·공유지의 처분제한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  - ②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. 이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,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④ 제2항에 따라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.
- 제21조(공공시설 등의 귀속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(주차장 •운동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

- 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"행정청"은 "은퇴자마을(도시) 사업자"로 본다.
- ② 제1항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·구거(溝渠)에 대하여는 국 토교통부장관을,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,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,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 공확인서로서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를 갈음할 수 있다.
- 제22조(부담금의 감면)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
  - 2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
  - 3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광역 교통시설부담금

- 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
- 5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
- 6. 「초지법」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
- 7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
- 8. 「하천법」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
- 제23조(준공검사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에게 교부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 중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- 제24조(조성된 토지의 공급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, 공급의 절차·방법 및 대상자,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있다.

#### 제2절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건설

- 제25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)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공주택사업자"는 "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"로, "공공주택"은 "은퇴자마을(도시)주택"으로 본다.
- 제26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건설기준 등)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구조·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·복리시설의 범위, 설치기 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# 제3장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공급 및 운영·관리 제1절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공급

- 제27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공급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임대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에 대하여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본다.
  - ③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입주자의 자격,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28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)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자(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②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입주자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(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"전산관리지정기관"이라 한다)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1. 성명
  - 2. 주민등록번호
  - 3. 주택의 유형
  - 4. 거주지 주소
  - 5. 최초 입주일자
  -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, 입주자등에 관한 정보가 분실·도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④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, 입주자등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9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공급을 신청(재계약을

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신청자등"이라 한다)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·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·적금·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·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 자산에 대한 증권·증서의 가액(이하 "금융정보"라 한다)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(이하 "신용정보"라 한다)
- 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, 환급금 및 지급금(이하 "보험정보"라 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, 「신용

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 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 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 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 조의2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
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31조(자료요청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38조에 따른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한다.
  - 1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 산정보자료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)
  - 2.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
  - 3.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·공무원재해보상급여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·별정우체국연금·장애인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·보험·급여에 관한 자료
  - 4. 「부동산등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,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
  - 5.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
  - ②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43조에

따라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 ·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,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- 제32조(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)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43조에 따라 제 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은퇴자 마을(도시)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·관리·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.

#### 제2절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운영 · 관리

- 제33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분양조건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분양 주택의 분양가격 등 분양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②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분양주택의 분양조건 등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5조를 준용한다.
- 제34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임대조건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임대

주택의 임대료(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② 은퇴자마을(도시)임대주택의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(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임대료 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,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증액이 있 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있다.
- ④ 은퇴자마을(도시)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은퇴자마을(도시)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를 준용한다.
- 제35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) ① 은퇴자마을 (도시)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- 1.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
- 2. 임대차 계약기간
- 3.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- 4. 은퇴자마을(도시)임대주택의 수선 ·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- ④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퇴자마을(도시)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은퇴자마을(도시)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,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6조(재계약 거절 등) ①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.

- 1. 분양 또는 임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
- 2. 입주자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2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- 3. 제28조에 따라 입주자가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4. 제35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5. 제37조를 위반하여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을 전대한 경우
- 6. 기간 내 입주의무, 임대료 납부 의무,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7.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을 고의로 파손·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은퇴자마을(도시)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.
- 제37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전대 제한)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입주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(매매, 증여,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,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(轉貸)할 수

없다. 다만, 근무·생업·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서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 대할 수 있다.

제38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 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·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
- 1.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입주자가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
- 2. 제37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
- 3.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 록정보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출입·조사·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조사자의 이

- 름·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입주자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.
-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. 제39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를 위반하여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을 전대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40조(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관리)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는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입주자가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.

제3절 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지원

- 제41조(보건의료시설 설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 (도시)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42조(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 (도시)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보칙

- 제43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·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44조(협조 요청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

- 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 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45조(보고·검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은 퇴자마을(도시)사업자의 사무실·사업장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 입하여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 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(감독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·변경,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·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
  - 2. 제14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
  - 3.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

- 4.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성사업 또는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47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46 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#### 제5장 벌칙

- 제48조(벌칙) ①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9조제 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은퇴자마을(도시)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.

- 1.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2.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. 다만, 이를 몰 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- ⑤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받은 자
  - 2. 제37조를 위반하여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은퇴자마을(도시)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자
- 제50조(벌칙) 제31조제2항(제3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)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제5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
- 2.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·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제52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·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은퇴자마을(도시)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
  - 3. 제33조제2항에 따른 분양계약 또는 제34조제5항에 따른 임대차계

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
- 4. 제38조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·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- 5.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
- 6.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
-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